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24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 박정현 · 민병덕 · 장철민

이기헌・정준호・김 윤

이학영 · 신정훈 · 김한규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

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제50조에서 "재생에너지"라 한다) 사용 실적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제5항제 7호의 사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확보를"을 "확보 및 환경적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로 한다.

3.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지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지침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6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 • <u>제8</u>	<u>제9</u>
<u>항</u>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u> </u>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	
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	
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제34조(결격사유)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2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제4항 · <u>제8항</u>	제9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	
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⑥ (생
 략)

 <신</th>
 설>

⑦ ~ ⑩ (생 략)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 제 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 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

(현행과 같음)
⑤
1. ~ 6. (현행과 같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
지(이하 제50조에서 "재생에
너지"라 한다) 사용 실적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제5항제7호의 사항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하
여야 한다.
$\underline{8} \sim \underline{11}$ (현행 제7항부터 제 1
0항까지와 같음)
∥50조(경영지침) ①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재무건전성 <u>확보를</u>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
한 사항
<u>4.</u>
<u>확보 및 환경적</u>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② (현행과 같음)